

【 1 】 제28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의년월일 : 1994. 8. 3.

제 의 자 : 의 장

제안이유

제28회 임시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 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기 위함임.

주요골자

회기 : 1994. 8. 10 ~ 8. 10 (1일간)

【 2 】 양주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발의년월일 : 1994. 7. 29.

발 의 자 : 우충국의원외 1인

제안이유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시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한 비용지급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함. (안 제2조)

나. 의원, 공무원, 정부 투자기관 임직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함. (안 제3조)

다. 비용의 지급은 국내여비 규정 별표 2의 제4호를 준용함. (안 제4조)

라. 허위진술, 감정등에 대하여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함. (안 제6조)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양주군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 (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중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 (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의회의원

## 2. 군수 등 관계공무원

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 투자기관의 임직원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국내 여비규정 별표2의 제4호를 준용한다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 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양주군의회 도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3 ]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